

정부합동감사결과

통 보

제 목 ○○○○미술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과다제한 등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1. 건설사업관리용역 과도한 실적제한

울산광역시(○○○○과)에서는 ‘○○○○미술관 건립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해 2017. 2. 28.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와 공동 계약 체결(계약액 2,627백만원, 계약기간 2017. 2. 28. ~ 2020. 6. 27.)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용역사업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고 용역사업 규모의 1/3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 ○○과)에서는 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위 건설 사업관리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일반입찰에 부치고,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양 또한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관서에서 제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 ○○과)에서는 2017. 1. 23.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에 “최근 5년 발주청에서 발주한 단일사업 실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대해 15억이상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또는 종전의 건설 기술관리법에의 책임감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위 관서(○○○○과, ○○과)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설사업관리 준공 실적이 대표사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보유한 실적이 15억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쳐야 함에도, 입찰참가자격에 구성원의 ‘실적은 대표사 실적에 한함’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표]와 같이 전국에 7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하여 실제 입찰참여는 2개 업체만 참가한 사실이 있다.

[표] 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15억 건설사업관리 준공, 대표사 실적

연 번	업체명	용역명	용역비 (억원)	공사종류	면적 (㎡)	준공일자	지분 (억원)	비고
1	(주)건축사사무소○○○○○○	국립○○○○○건립지원사업건설 사업관리용역	21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17,325	2012-11-30	21	입찰 참여
		○○○○○○○○○건설공사건설 사업관리용역	94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86,479	2013-12-14	47	
2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국립○○○○○건립지원사업건설 사업관리용역	26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23,967	2012-10-09	26	선정 업체
3	(주)○○○○○○○○○ ○○건축사사무소	○○○○○○○○○신축공사건설사업 관리용역	40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38,795	2012-02-29	20	
4	(주)○○○○○○○공사	○○○○○○○○○파크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부분)	69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25,959	2014-09-30	69	
5	(주)○○○○○○○건축사 사무소	○○○○○건립사업건설사업관리 용역	70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58,554	2013-02-28	49	
		○○○○○○○○○건립공사건설사 업관리용역	43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30,166	2013-12-31	27	
6	(주)○○○○○건축사사 무소	2012○○○○○○○○○조성사업건 설사업관리(CM)용역	173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222,880	2012-10-31	99	
		○○○○○○○Complex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8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49,667	2014-11-14	18	
		○○○○○○○건립공사전면책임 감리용역	19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31,219	2015-04-24	19	
7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	○○○○○○○○○○○건립공사전 면책임감리용역	93	문화및 집회시 설/전시장	154,826	2014-11-30	24	

2. 권한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부당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¹⁾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재무관)를 말하며, ○○과장(○○과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재무관)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지정받아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용역집행공고문 작성, 입찰참가자격 등록 접수 시 참가자격 확인, 가격입찰 공고, 개찰,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은 계약담당자(재무관)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지정받아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인 재무과장(○○부서)이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과)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작성 및 평가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용역집행공고문 작성, 입찰참가자격 등록 접수시 참가자격 확인, 가격입찰 공고, 개찰,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과에서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회계관직에 권한이 없는 ○○○○과에서 입찰공고문 작성, 참가자격 작성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통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실적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